



최소한의 재산분배 권리, 유류분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줄 수 있을까?

부모의 재산 배분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한 자녀가 과다하게 재산을 분할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지 못한 자녀 역시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분배 권리인 유류분 때문이다. 상속분쟁의 핵심인 유류분에 대해 알아보자.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둔 60대 여성 A씨가 있다고 가정하자. A씨는 아들을 편애하여 증여 및 유언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A씨의 사망 후, 그의 딸은 과다하게 유산을 증여 받은 오빠를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A씨의 딸은 재산을 찾아올 수 있을까?

상속인 중 1인에게 과도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위와 같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유류분 제도 때문이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분쟁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은행 내 법률 상담센터에는 이와 관련된 문의가 적지 않다.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이번 호와 다음 호에 걸쳐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1. 유류분은 무엇인가?

유류분이란 사망자의 유언 및 생전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보

상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분배 권리를 말한다. 사망자의 생전 개인재산 처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도 상속인 간의 공평한 재산분배를 위한 법적 장치이다.

Q2. 유류분 분쟁은 왜 발생하나?

최근 은행을 통한 법률 상담, 세무 상담이 활성화되면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이 적을수록 세금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때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증여는 유류분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유류분은 사망자가 증여한 재산까지 감안해 산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신고까지 마친 증여 하더라도 과도한 증여가 있었다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Q3. 모든 상속인은 다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

사망자의 자녀 및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권이 있다. 부모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유류분권이 있다. 이 경우 부모나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다. 드물지만 '4촌 이내의 혈족'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유류분권이 아예 없다.

Q4.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어떤 방식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나?

유류분 반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한 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위 금액에 자녀나 배우자는 2분의 1,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곱한 금액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사망자의 자녀 및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권이 있다. 부모나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유류분 요약표

구분	내용
청구인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4촌 이내의 혈족은 상속인에 해당하더라도 유류분권 없음)
상대방	증여 및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은 사람
유류분 비율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상속인에 해당하는 부모, 형제자매: 법정 상속분의 1/3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나 유언을 통해 받은 재산

있는 금액이다. 단, 부모나 형제자매의 경우 무조건 유류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상속인 자격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유류분권도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 명의 자녀를 두었고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뜬 B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B씨는 생전에 장남을 편애해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했는데 그 상가의 보증금이 1억원이다. B씨가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이 3억원일 경우 자녀의 유류분권은 얼마일까. 이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B가 남긴 3억원에 상가의 가격인 10억원을 더한 뒤 보증금 채무 1억원을 뺀 12억원이 된다. 이를 세 명의 상속인이 공평하게 상속받았더라면 4억원이 될 것이다. 이 때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인 유류분은 이 법정 상속분에 2분의 1을 곱한 2억원이 된다. 만약 B의 자녀들 중 2억원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장남을 상대로 그 부족분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남아 있는 재산인 3억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하기 쉽다. '3억원을 상속인 3명이 나누면 법정 상속분이 각각 1억원이 되는데,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인 5,000만원

이 유류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생전 증여 재산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다.

Q5.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으면 어떻게 되나?

부동산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의 시가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1980년에 증여받은 땅이라도 2015년 사망이 일어났다면 유류분 산정 시 2015년 당시의 시가로 계산된다. 만약 증여가 현금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 이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시가를 정한다. ♪

summary

- ①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분배 권리이다.
- ②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증여는 유류분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 ③ 부동산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의 시가로 계산되므로, 1980년에 증여받은 땅이라도 2015년 사망이 일어났다면 유류분 산정 시 2015년 당시의 시가로 계산된다.



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bhs0319@hanafn.com

- ▶ 학력·자격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변호사
- ▶ 저서
알고 싶은 부자들의 세금·법률 상담 사례집
- ▶ 경력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조정위원
서울시, 재향군인회 등 자문
SBS스페셜 <상속>, 서울경제 TV 등 출연
조선일보, 동아일보, YTN 등 언론기고
(現)한국 가족법 학회 이사(정회원)

